

2015. 8

Vol. 20

HOT ISSUE

“부실채권 어떡하나”...기업의 채권관리

BIZ REPORT I

위반시 5천만원...직원 개인정보 관리 A to Z

CEO INTERVIEW

금융솔루션기업 '주)피노텍' 김우섭 대표

ARTIST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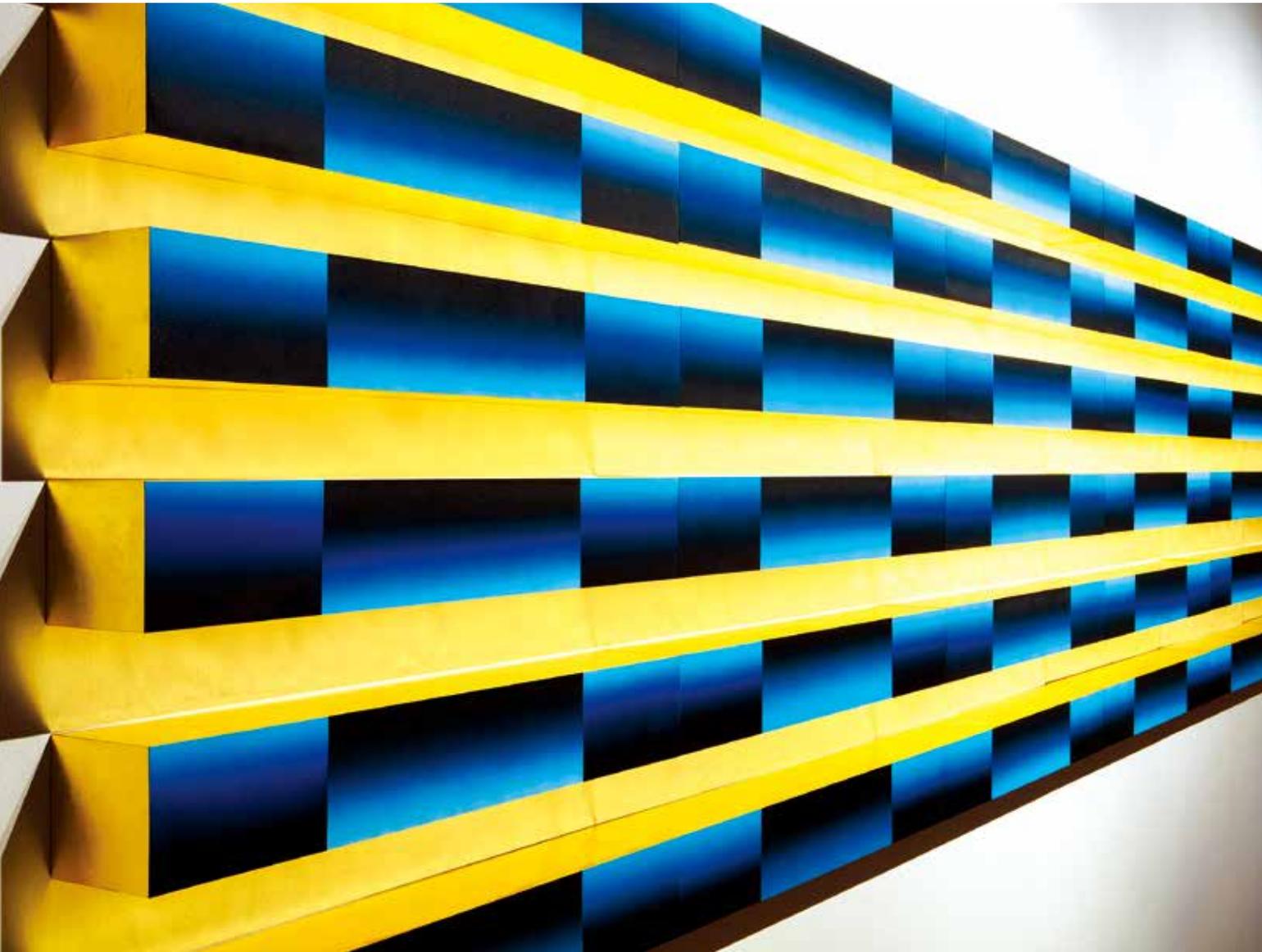
스웨덴 작가 니나 카넬

GREAT ARTIST

에드바르트 뭉크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usiness

- 03 HOT ISSUE - 법무 "부실채권 어떡하나"...기업의 채권관리
- 06 BIZ REPORT I - 개인정보 관리 위반시 5천만원...직원 개인정보 관리 A to Z
- 08 BIZ REPORT II - 노무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 보장
- 11 CEO INTERVIEW - 경영 금융솔루션기업 '(주)피노텍' 김우섭 대표
- 14 FOCUS - 직원교육 직원 교육부담 줄이는 일학습병행제
-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대기업 거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Art

- 17 BLUE-CHIP ARTIST 박현주 작가 - 빛의 모나드
- 22 ARTIST TALK 스웨덴 작가 니나 카넬
- 24 ART STORY 미술사 속 누드
- 26 GREAT ARTIST 에드바르트 뭉크
- 28 ART LAW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1)
- 30 HOT EXHIBITION 8월 화제의 전시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20
 발행처 (주)에스엠비넷 (주)예술만세
 발행일 2015. 8.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윤, 김창훈, 이창호, 이혜원, 채송화, 윤주희
 아트콘텐츠 김현성, 변중필,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02.741.7402)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전화 02)525-7021 (주)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
inj1223@gmail.com



채권회수 우려된다면 거래증빙·담보 챙기고 소멸시효 주의

“부실채권 어떡하나”...기업의 채권관리 방안

기업의 기본 목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여 매출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자연히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는 것이지만, 매출액 가운데 외상매출의 비중이 크고 매출채권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출액 증가는 오히려 기업경영에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오로지 채권회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선의 방법은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부실채권이 되거나 또는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거래처에 부도가 생기거나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될 것을 아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을 채권관리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자칫 좋은 거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채권회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 및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항상 거래의 증빙을 남기자

거래의 증빙(어떤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자료, 주로 서류)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나, 종종 거래의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법률적 분쟁이 생기게 된다. 분명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거래의 증빙에는 그것이 하나의 거래임에도 거래 단계별로 여러가지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거래의 핵심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증빙서류(이를 편의상 '핵심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얼마나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가다. 핵심증빙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 정도에 따라 향후의 사실적, 법적인 조치에 있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채권을 회수하는지가 결정된다.

필자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거래의 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다.

담보를 받아 놓자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거래처 회사 소유의 재산 또는 대표자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제공은 통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래처의 여건에 따라 담보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담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수시로 채권변제를 독려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도를 넘는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위법행위(이와 관련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한 변제 독촉을 금지하고 있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 차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소멸시효에 주의하자

모든 채권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이 있다.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때(변제기)로부터 시작해 법에 정해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법률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다. 기업(상인) 간의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점이다),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는 시효가 단축되기도 한다(예: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6개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등).

따라서 채권이 있더라도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법적인 방법으로는 받기가 힘들어지므로 평소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둬야 한다.

공증을 활용하자

통상의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해 제때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해 공증을 받고(공증비용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위 공증서류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을 활용하자

공증 외에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채무명령)을 받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정해진 양식에 채권자, 채무자 및 받을 채권의 내용을 적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채무자(거래처)가 지급명령에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러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내용 자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에 있어 판결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기업 거래처 사이의 상사채권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채권 내용에 다툼이 없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돼야 할 것이다.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부정한다든지, 소멸시효가 문제된다든지, 기타 제3자가 거래에 개입돼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견 아무리 간단하고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더 나아가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해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BIZart**

기업의 채권관리

1. 항상 거래의 증빙을 남기자
2. 담보를 받아 놓자
3. 수시로 채권변제를 독려한다
4. 소멸시효에 주의하자
5. 공증을 활용하자
6. 지급명령을 활용하자
7.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글.
중기이코노미 이해원 기자
dipsy@junggi.co.kr



위반시 최고 5천만원… 직원 개인정보 관리 A to Z

기수집한 주민번호는 내년 8월까지 반드시 파기해야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동의 없이 활용해 피해를 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개인정보 수집은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흔히 개인정보라고 하면 고객들의 정보를 떠올리나 여기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입사지원자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자.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뜻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되는 간접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많은 기업주들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채용, 고용유지, 퇴직 단계별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채용단계

회사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기간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유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력서에 포함돼 있는 경력, 학력 정보도 마찬가지다. 전문직을 채용할 때와 단순노무직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채용하고자 하는 직군에 경력,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 직원을 뽑는데 학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이 원칙이다.

채용과정이 종료되면 탈락자의 개인정보는 5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단 상시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다음 보관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유지 단계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됐다. 이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법령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직원들이 사내 인사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인증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이미 기업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일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시키고, 기록물일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비밀번호,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아야 하며 침입차단 기능,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말정산 등을 이유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나 기관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를 회사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해 직원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 단계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증명에 관한 정보는 직원이 퇴직한 뒤 3년까지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해야 한다. 만약 3년이 지난 후에도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한다면 퇴직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IZart](#)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ID/PW, 가족구성원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도서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신념/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범죄 등	전과·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	직장,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위치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병역	병역여부, 기간, 군번, 계급, 근무부대, 주특기
	화상	CC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자료: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벌칙사항

위반 행위	해당 조항	처벌 및 벌칙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15조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21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24조 제3항	
	29조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사실 미고지	26조3항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	31조	

자료:개인정보보호법

글.
노무법인 '사람과 사람' 박현진 공인노무사
kpla123@hanmail.net



대법,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노동3권 보장

권리 인정돼도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강제출국 및 처벌

대법원은 최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했다(2015. 6.25. 선고 2007두4995). 법률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번 판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조 설립·가입 및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법 “노조법상 근로자 아니다” vs 서울고법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91명은 2005년 5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주노조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요구했다. 이주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 6월 서울노동청은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인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 “불법체류가 근로자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이 사건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2007년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8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또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장 등 심도깊은 심리가 요구되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 4인의 심리에 의한 통상 판결이 아닌 대법관 14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외국인인지 여부나 불법체류(취업자격 유무)란 사실관계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청구권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인정했던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작업도중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당시 대법원은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5. 9.15, 대법 94누 12067).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다(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조법 제9조).

근로자성 부정...1.강제퇴거 및 처벌 대상자 보호는 법적 상호 모순

위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다는 점 △노조법상의 명문규정(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결론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다.(다만 이번 사건을 심리한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민일영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결론과 달리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소 제기 이후 10년 가까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노조법상의 근로자 신분을부여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이었다. 출입국관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취업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첫 번째 논거는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상호 모순된다는 것이다.

대법 '출입국법령과 노조법은 입법취지 달라 상호 모순되지 않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서 따온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과 노조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의도하는 입법효과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성 부정...2.노조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해도 보호실익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두 번째 논거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보호실익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과 이 사건 대법원의 결론에 반대 입장을 제출한 민일영 대법관의 주장이다.

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하여 취업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그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장차 근로관계가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 대법관 주장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출국 및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공개적인 노조활동은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민 대법관의 반대의견 논거 등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 이외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노조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란 답은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입법 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대법원 결론의 취지에 맞춰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과 함께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이해원 기자
dipsy@junggi.co.kr



“은행은 몰락한다... 핀테크, 선택 아닌 필수”

금융솔루션기업 ‘(주)피노텍’ 김우섭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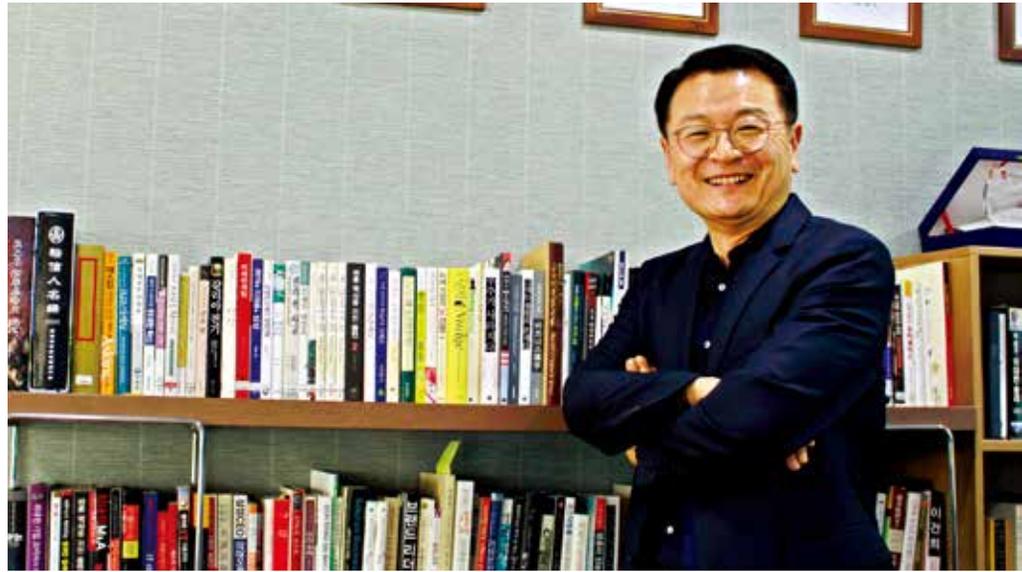
‘디지털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 영국의 금융시장 분석가인 크리스 스키너가 쓴 책의 제목이다. 이 책에서 스키너는 오프라인 지점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고했다. 핀테크 시대를 맞아 변화의 흐름에 뒤처진 은행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핀테크기업 (주)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는 ‘은행의 종말’이라는 문구에 방점을 찍었다.

“종말은 한두개가 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은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한국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서면 기존 은행들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김우섭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삼성 계열사에서 재무와 법무 일을 했던 삼성맨 출신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피노텍은 은행에 전자등기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직원 62명 중 연구개발 인력만 41명. 전자등기를 대리하는 방법, 법인등기 신청방법, 대출금상환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까지 마쳤다.





2

중소기업 솔루션, 철옹성 같은 은행권 뚫었다

이 회사의 주력상품인 '이지로R'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30분 안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피노텍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처음 제품을 팔기까지의 과정은 무던히 험난했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이름도 생소한 중소기업에 덜컥 담보대출시스템을 맡길 리 만무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은행문을 두드렸다. 결국 신한은행의 계약을 따냈다. 처음에는 SI방식으로 택했던 신한은행도 1년간 써보더니 ASP방식으로 바꿨다. SI(System Integration)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사용 실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신한은행을 레퍼런스로 확보하자 우리은행, 하나은행과의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현재 피노텍은 ASP방식으로 솔루션을 팔아 해당 은행에 담보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건당 1만원씩 요금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손해나는 거래를 하진 않는다. 왜 ASP일까.

“그게 은행도 편하기 때문이죠. 전자등기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양식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만약 SI방식으로 한다면 수정할 때마다 우리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죠. ASP방식으로 하면 우리 서버에서 수정하면 바로 솔루션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편하고 은행도 좋은 일이지요”

피노텍 솔루션을 통해 은행들은 편리하게 담보대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고 법무사가 2~3일에 걸쳐 등기 업무를 대행한 뒤에야 승인이 떨어졌던 것을 30분 안에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큰 반면 당장 회수할 수 있는 수입은 크지 않았던 탓이다.

“지난 7년간 사업을 하며 대출과 투자유치로 100억원 가까이를 끌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시는 못할 것 같네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6개월만에 시총 900억 돌파…희망 싸 올린 코넥스 상장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꾸준히 담보대출 거래가 발생하며 투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덕분이다. 2013년 5억8000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27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시장에도 상장했다. 상장한 뒤 달라진 점이 궁금했다. 일단 한국거래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말이다.

“회사의 구매력, 영업력, 대외섭외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이 먼저 손을 건네 오기도 하고요. 코넥스 상장법인이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해 인력 채용도 원활해졌습니다. 자금을 조

- 1 (주)피노텍 김우섭 대표
- 2 김우섭 대표는 핀테크가 한국사회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라고 말했다.
- 3 부동산 설정등기 전자서명 솔루션을 신한은행에 구축한 모습.

부동산 설정등기 전자서명이란?

고객님께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신한은행 영업장에서 작성하신 설정계약서 등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수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 본인확인

※ 계공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서명 본인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며, 신한은행에 저장되거나 활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의 이용 시간은 평일 07:00 ~ 23:00 입니다.

3

달하기 쉬워진 것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했다.

“코넥스 상장을 통해 주주와 임직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고용 안정성입니다. 이제 상장을 통해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3400원(종가 기준)이었던 이 회사의 주식은 6개월만에 1만3100원까지 올랐다. 시가총액은 900억원을 넘겼다. 피노텍이 S방식으로 제품을 팔았다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김 대표는 말한다. 향후 꾸준한 미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 목표는 코스닥시장이다. 그러나 코스닥 입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향후 추진할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중소기업들의 솔루션을 한데 모아 선보일 수 있는 오픈플랫폼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카카오든, 네이버든...“한국서 세계적인 인터넷은행 나왔으면”

은행을 상대로 제품을 팔고 있는 그는 기존 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터넷은행 도입과 핀테크 시대 도래가 금융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에도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다음카카오, 네이버 같은 IT기업들이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예금, 대출, 외환 등 인터넷은행도 기존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돈은 어느 회사에서 빌리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자율이 낮은 게 최고죠. 인터넷은행이 들어선다면 예금보다는 대출에 주력할 겁니다”

김 대표는 인터넷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임대료가 높은 곳에서 지점을 운영하느라 비용 지출이 크지만, 인터넷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의 시대에 태어나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일조했구요. 그러나 이제 전자, 철강, 조선은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망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핀테크가 한국사회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라고 말했다. 지식정보 중심의 핀테크 산업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핀테크, 누군가는 용성해야 합니다. 다음카카오든 네이버든 한국 기업 중 한 곳에서 세계적인 인터넷은행이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제가 만든 솔루션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일군 사람 중 한명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BIZart

용자 외에도 해당 기업의 2년 이내 재직사원, F로 시작되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단, F2비자는 제외)도 참여시킬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www.bizhrd.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거나, 전국 34개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의 참여 유형은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기업대학형 등 3가지로 나뉜다. 단독기업형은 기업이 직접 OFF-JT와 OJT를 모두 실시한다.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경우 해당된다. 공동훈련센터형은 한국폴리텍대학 등 OFF-JT 전문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OFF-JT는 해당 기관에서, OJT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유형이다. 기업대학형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이 기업 자체 연수원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먼저 일학습병행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 초기 교재 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프로그램은 2~3개월에 걸쳐 1직종을 개발하게 되는데, 보통은 근로자가 6개월에서 1년간 총 800시간 이상(OFF-JT 20%, OJT 80%)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업당 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초기 교재 개발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OJT 교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기업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기존 직원들을 OJT담당교사 등으로 선정, 교육을 진행하면 기업당 최대 900만원의 전담인력 수당이 지급된다. 이들 지원금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은 따로 없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면 기업은 OFF-JT와 OJT 운영비용 및 근로자에 대한 학습근로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직무별, 시간별, 인원별로 모두 다르나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OFF-JT의 경우 1년간 최대 400만원, OJT의 경우 1년간 최대 576만원이 지급된다. 단, 공동훈련센터형은 OFF-JT 비용이 기업이 아닌 센터로 지원된다. 학습근로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씩 1년간 총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업주는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121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BIZart**

일학습병행제 개념도



일학습병행제 진행절차 및 기업의 역할과 의무



자료: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산학협력처

클.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대기업 거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총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3846개)의 85.8%에 해당한다. 또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 역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결제대금 가로채는 이메일 무역사기 급증

해커조직이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인 척하며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44건(피해액 40억원)이던 이메일 무역사기는 지난해 71건(피해액 6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61%가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접수된 사고건수가 61건에 이른다.

이메일 변경 예시

	거래처 이메일	해커의 이메일	변경사항
이메일 글자 재정렬	acme868@freemail.com	acme686@freemail.com	acme868→acme686
이메일 글자 변환	sales@freemail.com	sales@freemail.com	sales→sales
일파벳 더하거나 빼기	widgets@freemail.com	widget@freemail.com	widgets→widget

자료:경찰청 사이버안전국



中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3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만원씩 인상됐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구분	기존	달라지는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대기업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대기업 20만원 중소기업 30만원
국가공공기관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월10~20만원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1000인 대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하	1인당 월10만원	1인당 월5만원
대체인력 지원요건 원화	채용시점이 출산·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시점이 출산·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자료:고용노동부



도 넘은 블랙컨슈머 “참는 게 능사 아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지자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때문에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도 함께 늘고 있다. 블랙컨슈머 대응방법으로는 ▲잘못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사과해선 안된다 ▲합리적인 보상원칙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라 ▲소비자와 통화할 때는 그 내용이 모두 녹취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통화하라 ▲가급적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하라 ▲어려운 약속은 피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하라 ▲증거제시를 요구하라 ▲절대 담당자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등이 제시됐다.



유독 섬유에 관한 한미FTA 원산지검증

지난해 미국 세관이 한미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관은 미국 세관과 함께 2014년 6월 서울과 경기지역 대미 수출 및 생산 섬유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현지검증을 실시했다. 현지검증은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업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방문해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 황재만 FTA과장은 이와 관련 "미국은 수입 섬유제품에 대해 유독 예민하다. 이에 한미FTA는 섬유에 대해서만 다른 원산지검증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근 설명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섬유제품은 한국과 미국 세관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사업장에 방문해 공동으로 현지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술등급 낮은 기업,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기술등급 BBB(17대 신성장동력산업 BB) 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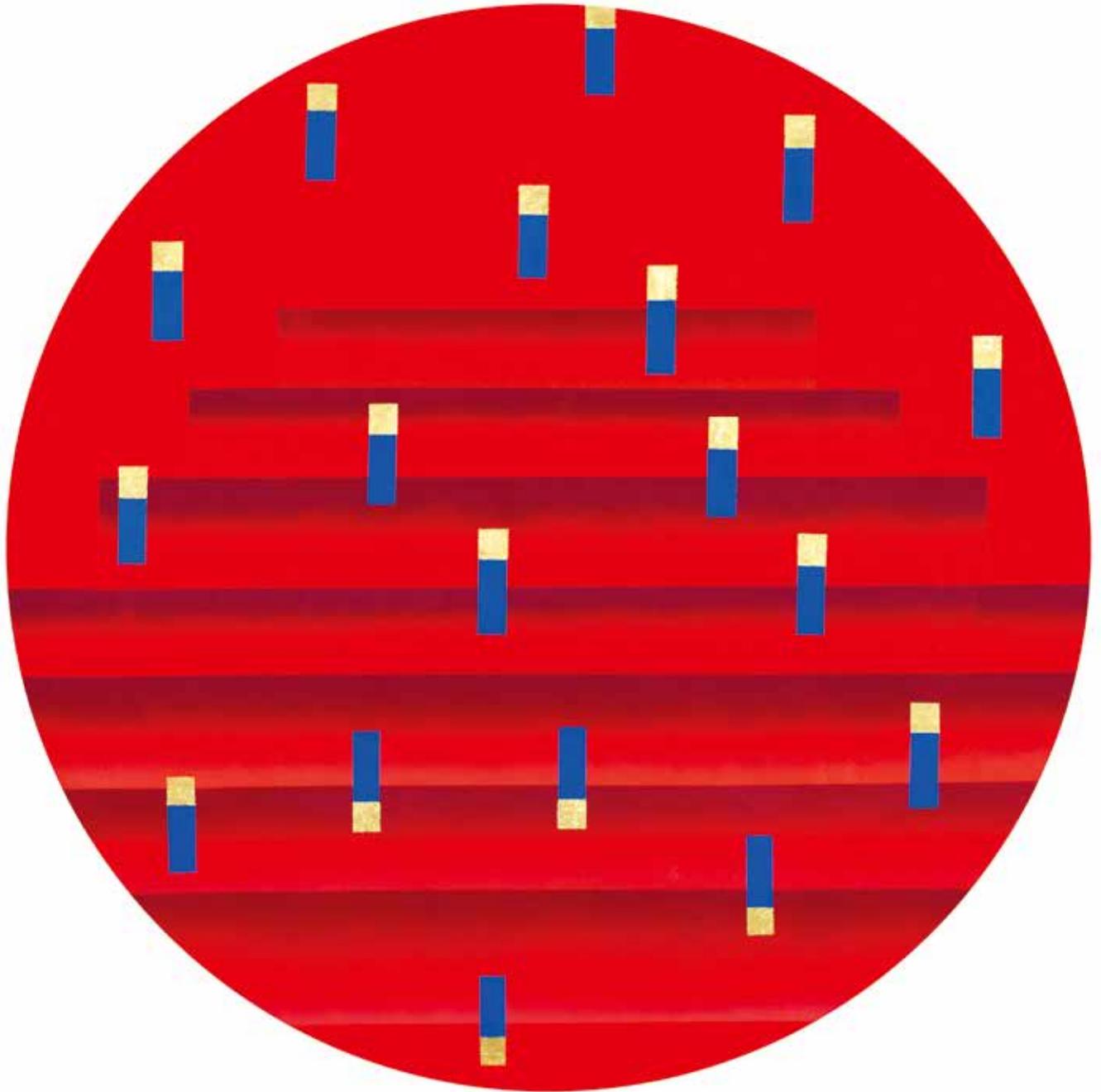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엔저에 속수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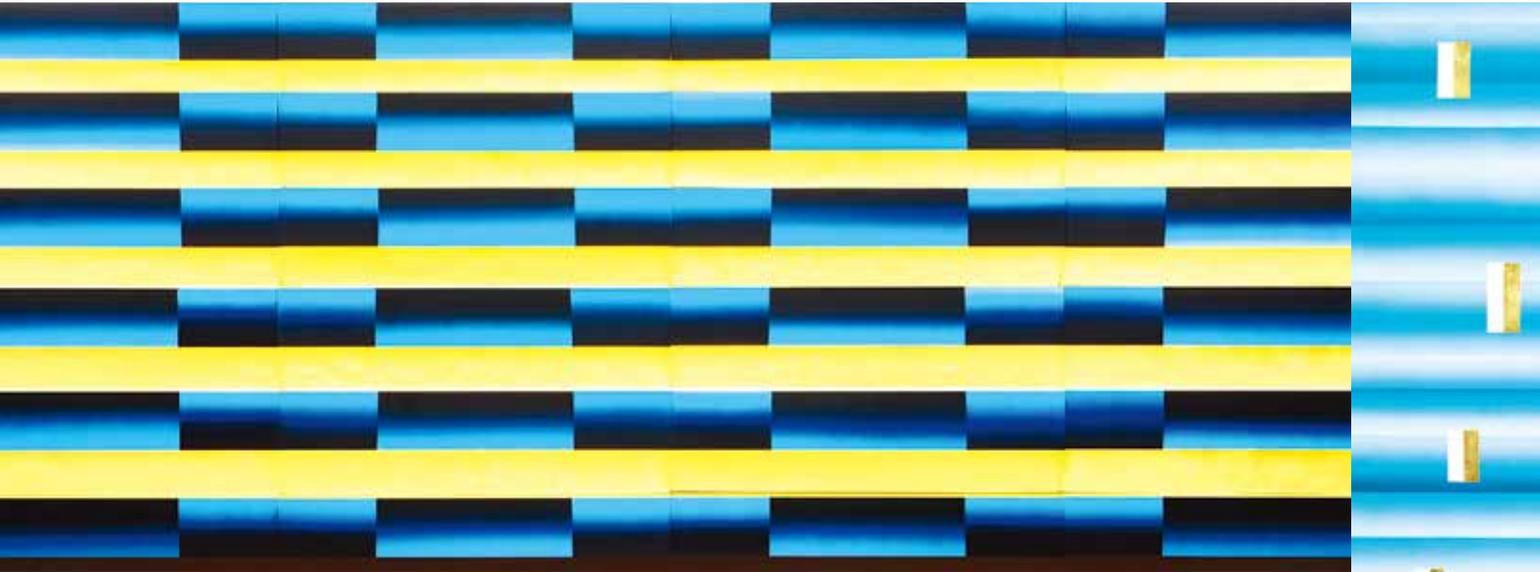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저가 공세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일본에 수출 중이거나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엔저로 인해 수출에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다. 특히 엔저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10곳 중 7곳은 마련하지 못했다(69.7%)고 답했다. **BIZart**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빛의 모나드
박현주 작가



2

모나드(monad, 單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 실체로, 비물질적이며 우주의 일체의 사상을 표출하는 우주의 생명 활동의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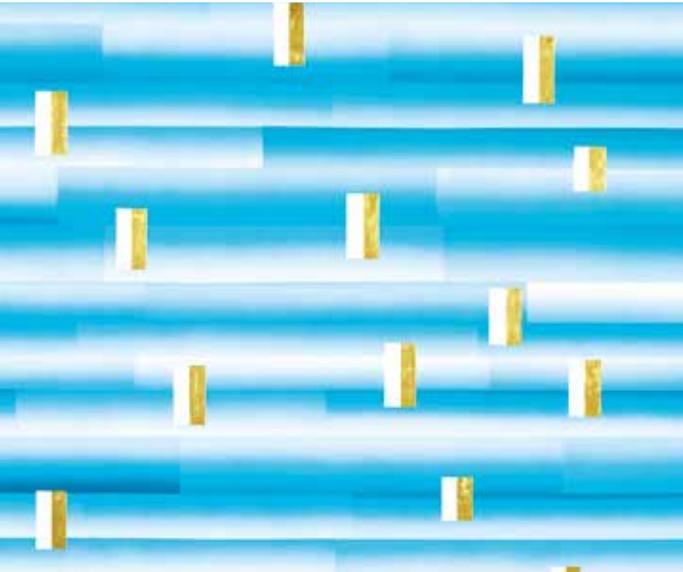
현대인의 고독한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라이프니츠의 창이 없는 모나드(monad)란 말이 인용되곤 한다. 어느 때 보다도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발달된 오늘날 우리는 타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한 말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늘 거리가 있다. 세대간, 부모자식간, 부부간, 정치인들간, 국가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립된 섬에 있는 것같은 외로움을 느낀다. 세상은 어느 때보다 밀착되어 있고 통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각 모나드로 단절되어 있다.

작업에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오브제의 unit 개념은 모나드(monad)의 개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별적임과 동시에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을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본질을 추구하는 나의 작품 성향은 우리의 감각과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그리워한다. 각각의 모나드로 고독에 처한 우리는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전체를 꿈꾼다. 그 질서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말처럼 실패에 감긴 실이 우리의 운명은 실패의 실이 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곳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통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 세계는 인간 차원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이다. 그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나의 작업의 지향점이다.

문명의 이기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와 지나친 소비위주의 현대사회는 인간이 꿈꾸는 태초의 낙원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으로부터 나의 작업은 출발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Here and now, this moment(여기와 지금, 그리고 이 순간)라는 직면하는 삶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종략)

무한 수명, 무한 빛에 대한 갈망과 동경, 빛으로 넘쳐흐르는 피안의 세계... 내가 꿈꾸는 빛의 세계는 물질과 비물질(정신, 영혼)의 경계 위에서 마치 공기 중을 부유하는 나비가 바라보는 세계와 닮아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쫓아가는 '빛의 시각적 환영' 속에 있지 않을까. 현실과 비현실, 물질과 정신, 입체와 평면, 수직과 수평, 사각과 원 등의 서로 모순되면서 대조되는 요소들이 한 화면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세계... 불확실하고 어두운 오늘날의 현실에서 삶에 지친 영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 빛의 모나드가 그려내는 공간이다.(작업노트 중 발췌) **BIZ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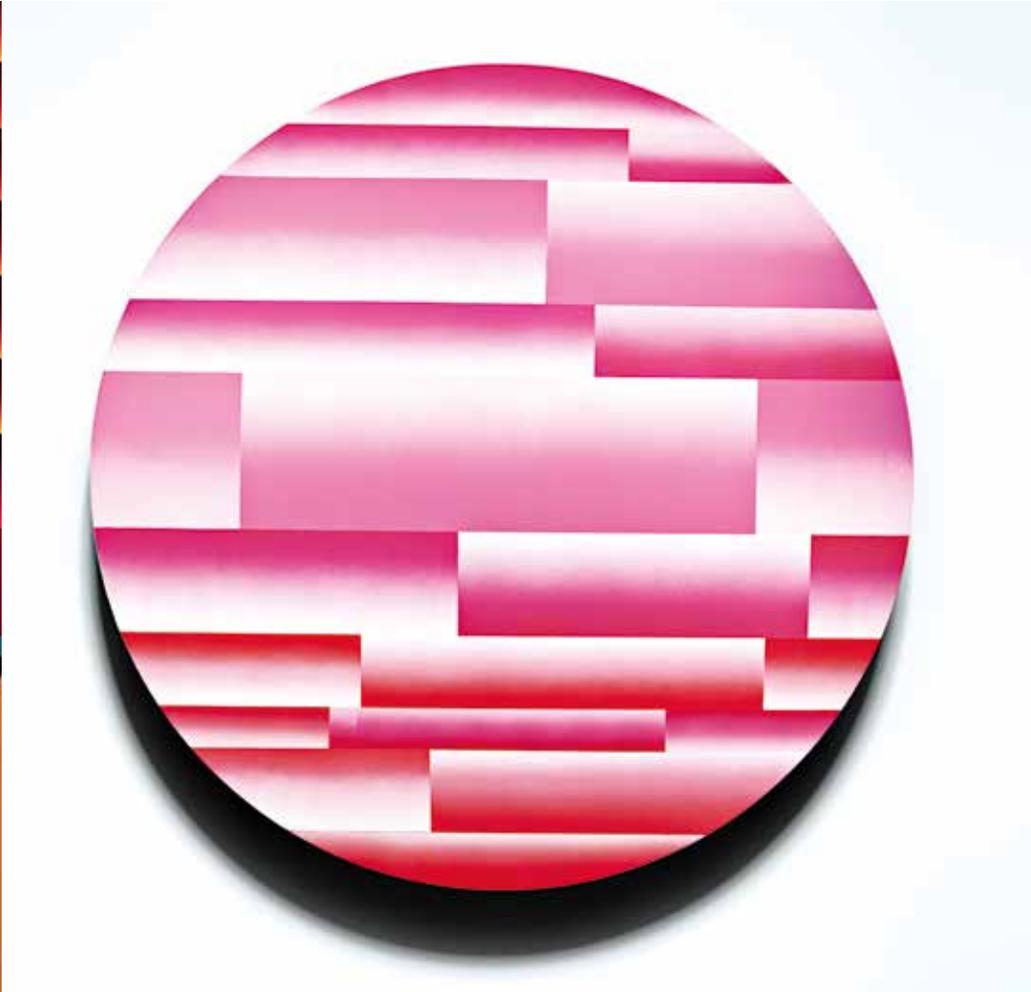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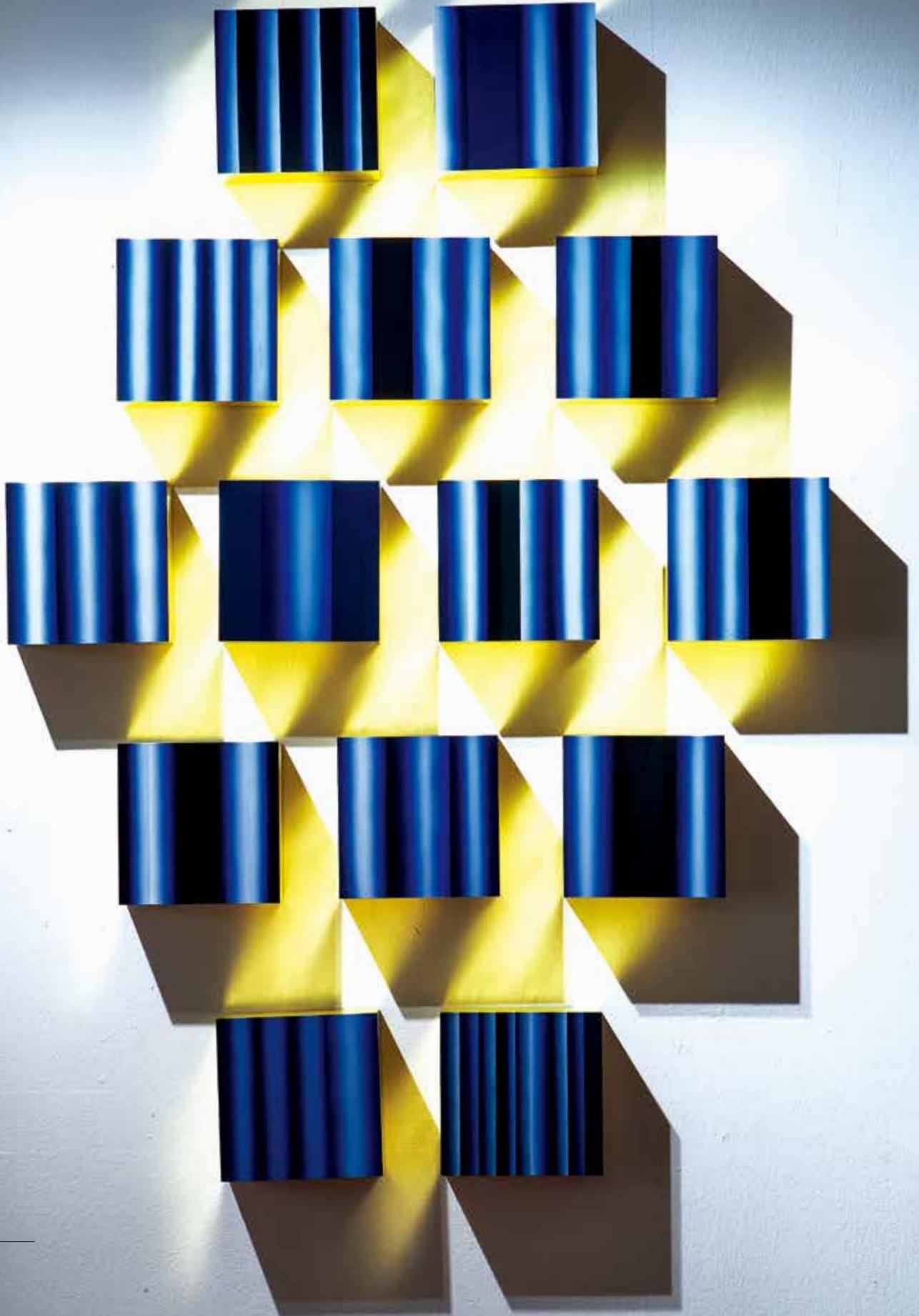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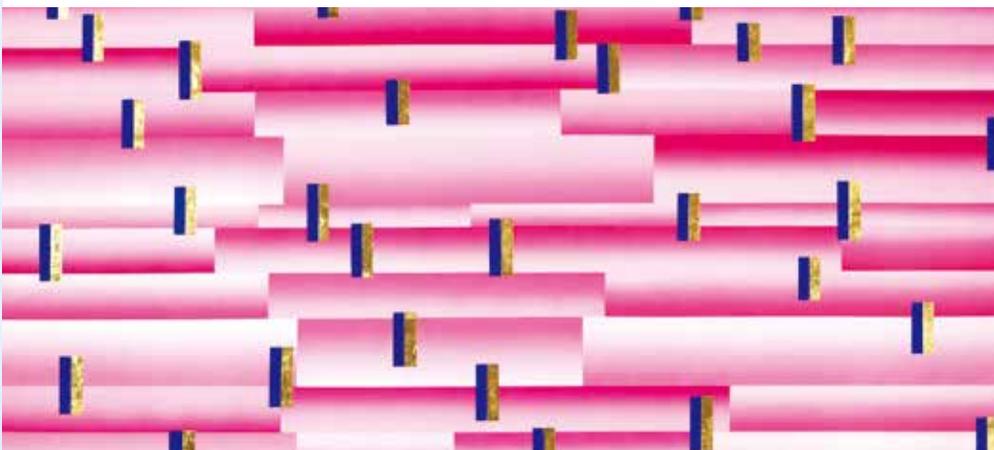
5



6



8



9

- 1 빛을 쌓다#1 round 100cm(diameter) acrylic,gold-leaf on canvas 2014
- 2 InnerLight2013 LAVIDA#2-1 2013 480×150×12cm(WHD) mixed media
- 3 빛조각-blue 162.2-130.3cm acrylic, gold-leaf on canvas 2014
- 4 untitled#1 194×130cm acrylic, gold-leaf on canvas 2013
- 5 temple of Light#7_91×116cm_2013-s
- 6 Light Monad13 2015 80(diameter)cm×15(D) stainless-steel acrylic
- 7 InnerLight2013 LAVIDA#1 2013 23×23×9cm(WHD) mixed media
- 8 accumulated LIGHT RED #1 2014 480×150×12cm mixed media
- 9 빛조각-pink 227.3-181.8cm acrylic, gold-leaf on canvas 2014

Artist Profile

박현주 Hyunjoo Park

- 1991 서울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전공(B.F.A.)
- 1993 뉴욕대학대학원졸업(M.A.)
- 1999 동경예술대학대학원 유화전공 졸업(M.F.A.)
- 2000 일본 문부성 장학생
- 2002 동경예술대학대학원미술학졸업 유화재료기법 Sato Ichiro 연구실(D.A. 미술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 단체전

- 2014 <색 미술관에 놀러가다>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 2014 <시대와 감성> 해든 미술관, 강화도
- 2012 <한일 금박 회화전> Satellite gallery, 나고야, 일본
- 2010 S.A.I.C.From desire to the sublime,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0 한일 금박 회화전, 서울 외 다수

교육 경력

서울대 울산대, 추계예술대학, 홍익대, 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인천대 강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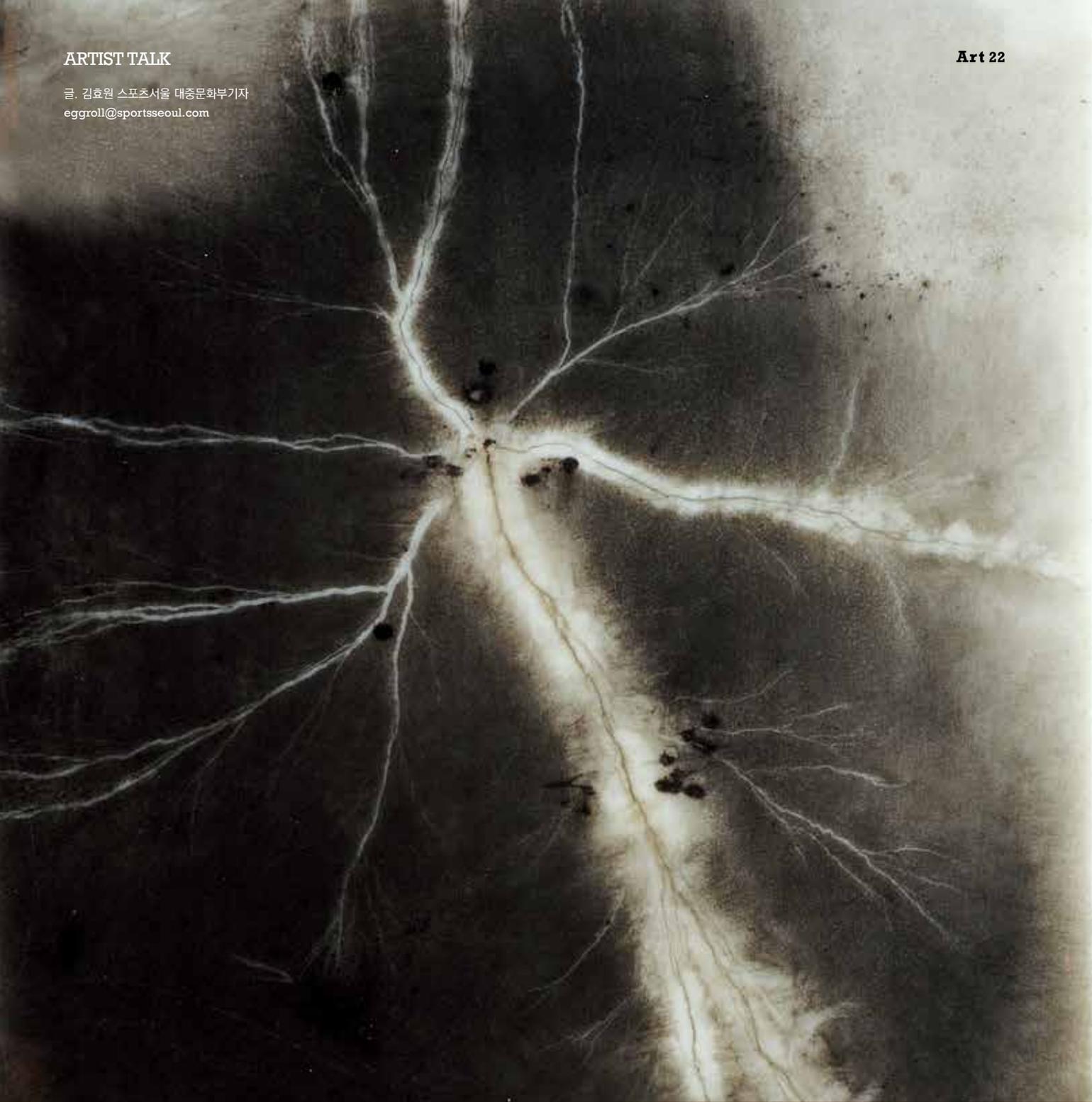
작품 소장

서울 파이낸셜 센터 신한PB, 두산 중공업 정성관, 동경예술대학, Plamatelspoly plastic Co. 일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 드림성형외과, 대림미술관 외 개인 소장 다수

개인전

- 2014 <빛을 쌓다> 영은 미술관 입주 작가전, 경기도, 광주
- 2013 <빛의 성전> 금산 갤러리, 서울
- 2011 <floating Light> Kips gallery, 뉴욕
- 2009 <diagram of Light> 빛갤러리 초대전, 서울
- 2008 <beyond of Light> 선컨템퍼러리, 서울
- 2006 SADI window gallery, 서울
- 2004 gallery Kaze, 오사카, 일본
- 2003 인화랑, 서울
- 2002 gallery Kaze, 오사카, 일본
- 2002 DNA -Die Neue Aktionsgalerie, 베를린, 독일
- 2001 고바야시화랑(新世代の視點기획)(SAISONARTPROGRAM기획) 동경, 일본
- 1999 금산화랑, 서울
- 1998 고바야시 화랑, 긴자, 동경
- 1997 gallery Q, 긴자, 동경
- 1994 gallery Icon, 서울, 한국
- 1993 80washington square gallery, 뉴욕, 미국

글. 김효원 스포츠서울 대중문화부기자
eggroll@sportsseoul.com



스웨덴 작가

니나 카넬

스웨덴 작가 니나카넬(Nina Canell, 1979)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다. 물질의 성질과 상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운동성에 대한 사유를 다양한 오브제, 조각 및 설치 등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르코미술관(8월 9일까지)에서 <새틴 이온 Satin Ions>전을 열며 한국의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2 Treetops, Hillsides and Ditches _ detail

나나 카벨은 이색적인 재료를 사용해 눈에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작품으로 다루는 독특한 작가다. 주로 물, 고무, 합성섬유 카펫, 못, 전기, 버려진 양말, 주파수 등을 소재로 표면 장력, 점성, 자기장, 가청 주파수, 에너지 등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상화한다.

초음파 발생기를 물속에 넣어 기포가 발생하도록 한 다음 그 옆에 시멘트 포대를 설치해 전시 기간 중에 시멘트가 서서히 굳도록 하는 작업 <상동곡 Perpetuum Mobile(25kg)>(2009), 양말의 실오라기를 정전기로 퍼지게 한 <Green(Diffused)>(2014), 벽에 잘라내고 남은 카펫롤을 통해 남겨진 것과 쓰인 것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알려지지 않은 크기>(2015), 자석 자기장의 힘으로 얇은 못을 연결한 <Thins (2015)>, 방수재료와 물의 장력으로 석판 위에 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업 등 다양하다.

어떤 작업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작업들이다.

작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시장에서는 매우 예민하고 세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상동곡 Perpetuum Mobile>은 이번 전시의 서론과도 같은 작품인데 기포가 시멘트 표면에 닿아 윗면이 서서히 굳어 간다. 나는 설치물들이 외부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무, 버려진 양말, 못 등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독특하다

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보다는 '언그레이스풀(Ungraceful, 불품없는)'한 재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작업을 통해 추구하는 세계는 무엇인가?

내 작업은 잘 관찰해야 한다. 다양한 재료들의 물질적 결합을 통해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와 운동성이 잠재된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세계를 다룬다. 에너지와 같은 비물질의 전이현상을 물리적으로 보이는 가시적 세계를 통해 추적해 나가거나 그것을 매개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구한 재료로 한 작업도 있는데?

서울 근교의 케이블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케이블을 수집했다. 전선의 피복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접하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버려진 것들, 잊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버어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채워질 수 있기에 아름답다. 이 재료가 억지로 힘과 열을 가해 만든 게 아니라서 재미있었다. 다 쓰고 버려진 것들을 가져와 그대로 전시했다. 껍질만 남은 전선의 피복은 물리적인 길이가 '정보'의 송수신이라는 비물질적 거리를 드러내는 덩어리로 변모한 역설적인 상태를 암시한다.

작업을 할 때 다른 작가와 다른 태도가 있다면?

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평소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작업을 한다. 작가로서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다. 나는 항상 주변의 것을 어떻게 하면 미술로 끌어낼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BIZart**



3 나나 카벨 작가



4 Brief Syllable (Weak)

글. 변종필
 양주시립장욱미술관 관장, 미술평론가
 jpdada@hanmail.net

미술사 속 누드

서양미술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창조적 모티프였다. 특히 누드작품은 동양과 달리 서양미술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누드는 특성상 섹슈얼리티(Sexuality)에 필연적 관심이 따르는데, 누드작품하면 남성보다 여성누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성(性)에 대한 인간의 한 가지 성향이다. 그런데 미술사를 들춰보면 인체는 여성누드보다 남성누드 작품이 더 앞서 제작되었고, 관심도 또한 더 높았다. 남성누드와 여성누드가 고대미술에서 현대미술로 이어지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는 서양미술의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고전미술의 남성누드 VS 여성누드

미술사에서 누드작품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는 인간중심, 남성중심 시대였다. 그리스인은 신을 닮고 싶은 대상으로 삼았지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말처럼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인체비례(여성-8등신, 남성-7등신)로 정해놓은 카논(canon)은 당시의 산물이다. 그리스시대는 특히 남성누드가 유행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의 영향이 컸다. 남성의 운동경기는 시민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최종 우승자는 남녀노소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근육질로 다져진 몸매와 에너지 넘치는 탄탄한 몸을 지닌 남자를 인격의 완성체로 여겼다. 당시 길거리에서 완벽한 몸매의 남자를 만나면, "당신은 신이 아닌가요!"라는 감탄사를 보낼 정도였다. 이는 오늘날 탁월한 몸매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몸짱'을 보고 '신의 몸매'에 비유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스 시대 대표 조각상인 <원반을 던지는 사람>은 운동과 정신, 정신과 신체의 합일이 가장 이상적 인간형이라는 고대 그리스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원반 던지는 동작이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어느 각도에서도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 <원반 던지는 사람> 로마시대 복제품

2 <벨베데레의 아폴론> 기원전 330년, 로마시대 복제품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여자를 표현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 남성누드와 다르게 코스튬(옷을 입은 모습)작품에 한정되었고, 누드로 표현되었다고 해도 신(비너스)에 비유한 표현이거나 표현수위에서 남성누드와는 현저히 차이가 났다. 남성누드는 힘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지만, 여성누드는 남성의 욕망을 채우는 감상대상으로 주체보다는 객체로 표현되었다. 이는 여성누드작품을 제작 의뢰하고 소장하는 주체가 남성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누드는 감상의 주체인 남성의 눈을 만족하게 하는 눈요깃거리의 측면이 강했다. 그래서 남성누드는 당당함과 숨김없는 표현으로 남성의 우월함을 표출하는 것이 많지만, 여성누드는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연약한 모습이 많다. 남성누드 조각상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로 손꼽는 <벨베데레의 아폴론>과 <카피톨리누스의 비너스>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다. <벨베데레의 아폴론>은 아폴론이 활을 쓰는 장면을 조각한 것으로 매끈한 수영선수의 몸을 보는 듯하다. 역동성은 떨어지지만, 신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남성성을 강조하고, 완벽한 비례미를 추구했다. 이에 견주어 <카피톨리누스의 비너스>는 목욕을 막 끝낸 비너스가 몸을 살짝 웅크린 채 수줍은 듯한 손은 가슴 부위를 한 손은 음부를 가리고 앞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주위를 의식하는 표정, 마치 실제 피부 같은 부드러운 여체의 속살처럼 느껴지는 사실적 질감, 강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적인 자세(특히 뒷모습) 등 관자(남자)의 시선에 무게를 두어 표현했다. 이 같은 매혹적인 자세는 정숙한 여인의 전형처럼 인식되어 보티첼리의 유명한 <비너스탄생>을 포함한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3 <카피톨리누스의 비너스>기원전 1세기, 로마시대 복제품

고대 그리스에 이상적인 몸매로 표현되던 누드작품이 중세시대에는 수치와 차욕의 대상으로 여겨져 쇠퇴했지만, 인간중심의 부활을 강조한 르네상스에 재등장했다. 이후 누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작가들 중심으로 표현의 내용과 형식이 확장되었다. 19세기 이전의 누드작품이 신들을 주제로 삼아 서사적 구조로 표현되었다면, 19세 후반부터는 인상주의화가들처럼 현실에 근거한 누드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특히 남성누드보다 여성누드에서 전통형식을 파괴한 작품들이 월등히 많아졌다.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는 여성누드화의 전형으로 티치아노, 앵그르 등으로 이어진 모방의 대상이었지만, 마네의 <올랭피아>와 같은 도발적인 작품이 등장하면서 누드화가 미술장르 중 가장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20세기 남녀 누드작품은 형상의 왜곡부터 신체의 해체까지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며 고전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아름다움의 전형을 해체했다.



4 조르조네 <잠자는 비너스> 1510년 / 티치아노 <우루비노의 비너스> 1538년 / 마네 <올랭피아> 1865년

현대미술의 남성누드 VS 여성누드



5 데이비드 호크니 <비버리힐스의 샤워하는 남자> 1964년 / 프란시스 베이컨 <침대 위의 초상화 습작> 1963년



6 피카소 <아비뇰 처녀들> 1907년 / 루시안 프로이트 <휴식 중의 연금관리자> 1994년



7 샌드라 피셔 <붉은누드> 1989년

현대미술에서 남성누드의 가장 큰 변화는 고대미술이 추구했던 스포츠맨이나 영웅의 이상적 몸매가 사라지고, 익명의 평범한 남자몸매가 화면을 차지한 점이다.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년~)의 동성애적 표현을 담은 누드화처럼 선망의 대상으로 표현되던 남성누드에 관한 고전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거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처럼 아예 인체의 해체와 왜곡을 통해 인간의 내적 고립과 불안을 파격적으로 제시한 누드화가 등장했다. 스탠리 스펜서(Stanley Spencer, 1891~1959)처럼 남성누드를 냉정할만큼 극사실로 표현하며 성적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작품도 있다. 이들처럼 현대미술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남성누드의 오랜 내용과 형식이 파괴되었다. 여성누드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속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그림 속에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아비뇰의 처녀들>과 같은 작품을 통해 여성누드를 하나의 조형적 탐구 대상으로 여겼고,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극히 단순화시킨 형태와 색만으로 인체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 1922~2011)는 마치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연상시키는 비호감 몸매로 여성누드가 지녀왔던 성적환상을 깨뜨렸다.

변화는 그림 표현에만 있지 않았다. 남성화가의 전유물이었던 누드화 장르에 여성화가 등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누드화가 시도됐다. 예를 들면 1996년 46세의 나이로 요절한 여성화가 샌드라 피셔(Sandra Fisher, 1950~1996)의 <붉은 누드>는 남성이 아닌 여성화가의 시선에서 남성누드를 그린 작품이다. 남성모델을 여성모델처럼 관능적인 자세로 표현하여 마치 누드화를 관람하는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역전된 느낌을 준다. 이처럼 현대미술에서는 남성누드와 여성누드 모두 전통양식에서 탈피하거나, 하나의 개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몸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능하는 기준처럼 작용한다. '착한몸매', '팔등신', '우월한 유전자', '이기적 몸매' 등 몸짱을 일컫는 신용어가 난무하고, 완벽한 몸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홍보이미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의 그릇된 일면이지만, 본질적으로 탁월한 외모에 끌리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의 탓이 크다. 현대미술에서 남성누드나 여성누드와 관련해 새로운 창작 시도와 변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강력한 반응들이다. BIZart

신경증적 인간 에드바르트 뭉크 (1863~1944)



1 뭉크의 뼈가 있는 자화상을 보고
49.7×34.7cm, charcoal on paper, 2013



2 뭉크의 절규를 보고
49.7×34.7cm, charcoal on paper, 2013

글. 류장복

(jangbok@lycos.co.kr, 화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투명하게 짙은’ (일민미술관 2전시실,
서울, 2104) 등 21회, 그룹전 다수

저서

『화가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타이미지,
2013 『한국동화문학선진 작가 초상화 모음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한남동, 사람들』
타이미지, 2011 『철암에서 그리고 쓰다』
박영률 출판사, 2008

생의 불안을 한편의 심리극처럼 그림의 무대에 올려

뭉크의 그림이 우리의 눈을 파고드는 것은 흠으로 돌아가려는 죽음의 충동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때문이다. 그의 이미지는 마음속 깊숙이 쌓여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난 절규하는 자연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서 선과 색이 몰려 들어 나를 마비시켰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의 한복판에서, 그 풍경이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은 그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뭉크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한 <절규>는 별절게 세상을 물들이는 노을을 배경으로 다리 위에서 동행하던 두 명의 일행과 떨어져 혼자 돌아선 채 두 손으로 감싸듯이 귀를 막고, 오그라드는 두 눈을 향해 흐물흐물 거리는 얼굴의 반신상을 전면에 배치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이미지인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곤장 파고드는 데가 있다.

뭉크는 생의 불안을 한편의 심리극처럼 그림의 무대에 올렸다. 그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 불안 그 자체가 되어 감상자의 마음을 옥죄어 들었다. 현실과 꿈 사이 어디쯤에 있는 그의 그림은 실존세계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환상을 풍요롭게 드러내고 있었다.

내면과 외면의 경계에서 문명과 섞이기를 거부

“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셋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나머지 한 명이 둘의 대화에 끼어들어 다른 하나를 소외시키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늘 신경과민 상태였다. 주변에 사람들이 얼떨거리는 걸 참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밤낮으로 라디오를 틀어놓았다. 기차역 구내식당에서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가운데서 혼자 밥을 자주 먹었고,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겼다. 홀로 낯선 곳이나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자신을 고수하면서도 외부로 향한 그리움을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외로움을 누렸다. 여성의 몸을 찬미하고 갈구하지만 사랑을 하지는 못하는 식이었다. 누구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꺼려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살 냄새 나는 떠돌이 소음을 자발적으로 찾아 다녔다.

“내게 그림그리기는 일종의 중독성 있는 질병입니다!”

뭉크는 내면과 외면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며 문명과 섞이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오직 그림으로만 세상과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그림은 생의 불안 자체였다. 그는 건축물의 벽장식 따로 스스로 기뻐한 작품 ‘생의 프리즈’에 기초하여 사랑, 병, 죽음과 번뇌를 그렸다. 그의 붓끝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냥하여 무표정한 일상을 깨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벌떡이는 내면의 동물성을 수시로 건드렸다.

수천여점에 달하는 유작, 오슬로 시에 기부

뭉크는 종교적 신념으로 빈민촌을 돌보던 의사와 활발한 성격의 젊은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날 때부터 병약했던 그는 평생 죽음의 검은 천사와 함께 살았다. 5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었고 14살 때 한 살 많은 누이를 같은 병으로 잃었다. 20대 파리 유학시절에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사별해야 했다. 30대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동생을 지병으로 떠나보내야 했고 여

동생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했다.

전통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아나키즘의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있었던 세기말과 세기 초를 지나오면서 뭉크는 늘 사랑에 실패했다. 보헤미안 기질이 다분했던 연상의 유부녀와 6년 동안에 걸친 사랑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20대의 젊은 뭉크는 결국 뿔한 가슴을 안고 파리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30대에 들어서서는 베를린의 젊은 무리들 가운데 빛나는 한 여인에게 구애를 했지만 시인이었던 친구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어찌지 못해 방황했다. 39세의 뭉크는 여인의 격정적인 구혼에 휘말려 그녀의 총기오발로 인해 손가락 한마디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큰 충격에 빠진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신경증적 피해망상에 시달려야 했다. 거의 매일 술에 절어 있는 상태에서 폭력사건에 자주 노출되었다. 그는 정신과 치료와 요양을 번갈아가면서 40대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다.

50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나름대로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핏줄이라고 유일하게 남은 여동생과 이따금 만나는 일을 제외하고 거의 그림에 파묻혀 살았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작업실에 드나들 수 있었다. 뭉크의 삶은 시종일

관 단조의 우울함이 지배했다. 그의 삶은 의문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삶의 평범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그림 안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그림은 일기였다.

뭉크는 끊임없이 기억을 되새김질했다. 같은 그림을 여러 해에 걸쳐 다시 여러 장 그렸다. 같은 기억 속에서 퍼 올린 감정이 그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는 자주 유화를 석판화나 목판화로 옮겼다. 그는 공평하지 않은 이상 평소에 그림을 잘 팔지도 않았다. 그림으로 남아 있는 과거의 추억 속에 묻혀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회화 1,008점, 판화 15,039점, 드로잉과 수채화 4,443점, 조각 6점을 남겨 고스란히 오슬로 시에 기증했다.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의 승리였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의 차례라고 말했던 뭉크는 늘 소수자 편에서 그들을 옹호했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늙은 뭉크는 시를 떠나지 않았다. 적대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침거하고 있던 1943년 겨울, 탄약고에서 대폭발사고가 일어나 그의 집 유리창이 모두 박살났다. 그때 80세의 생일을 막 지낸 뭉크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두커니 계단에 서있었다고 사람들은 증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관지염으로 악화된 감기가 원인이 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다. **BIZart**



3 뭉크의 자화상을 보고 49.7×34.7cm, charcoal on paper, 2013



4 뭉크의 마돈나를 보고 49.7×34.7cm, charcoal on paper, 2013



5 뭉크의 사춘기를 보고 49.7×34.7cm, charcoal on paper, 2013

EDVARD MUNCH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1)

다음호면 벌써 1년여의 연재가 끝나게 되는군요. 이번호와 다음호는 미술품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유명 작가의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 때 보면 유명 갤러리나 옥션에서 진짜라고 했었는데 왜 안 믿고 싸우는 건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문제는 감정인의 결과에 100%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감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1 <위작 시비가 불거진 박수근의 작품 <발레타>가 진품임을 발표하는 감정위원 대표 오광수(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사진 <아트레이드>>

2 감정 결과를 인터뷰 하는 모습

감정이란 미술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진위감정'과 얼마정도 나갈지 가능하는 '가격감정'이 있고 통상 두 전문가는 다릅니다. 위에서 본 옥션 감정전문가는 대부분 가격전문가라고 볼수 있고, 미술품 감정 협회 등은 진위 감정을 주로 하지요.

진위감정은 감정가의 안목에 의한 '주관적' 진위감정과 기타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객관적인' 진위감정이 있습니다. 통상 과학감정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과학감정으로도 위작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꾼이 이중섭이나 박수근 시대에 사용되던 종이나 물감을 구해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만들었을 경우가 있지요.

감정에 쓰이는 자료로는 미술가부터 현재의 소장자까지 이어진 소장자의 연속을 나타내는 역사적 기록인 '소장기록'이 있습니다. 소유의 연속이 이어지면 진품성을 추정합니다.(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자가 추정되는 어음, 수표와 비슷합니다)

또한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e라 하여 작가의 전작을 실은 도록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품 도판, 재료, 기법, 제작시기, 소장이력, 전시이력, 참고자료 리스트, 작가 생애, 제작 당시의 개인사, 신체조건, 정신상태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국내 미술계에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감정인의 책임에 대해 위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주거나, 결과에 대해 책임지라고 할 수 없고, 암에 걸려 의사를 찾았지만 결국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의사가 책임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수단채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을 의무로 삼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글. 김별다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셋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엘지전자 스마트비즈니스센터(컨텐츠 / 플랫폼 사업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틈틈이 미술법에 흥미를 가지고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박물관법 칼럼을 쓰고 있다.



것이죠. 감정인도 이 책임을 지는데 통상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 조항들을 보면 감정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감정사무를 처리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감정이 틀렸나 옳았나라는 결과 자체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인에게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호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Zart

클.
스포츠서울 대중문화부 김효원기자
eggroll@sportsseoul.com

8월 화제의 전시

여름은 피서의 계절. 더위를 피해 어디로 갈까 궁리하게 된다.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미술관 만한 곳도 드물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미술관에서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작품들을 감상하다보면 여름이 즐겁다. 피서용으로 제격인 전시들을 소개한다.

동강국제사진전

10월 4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일대

국제적인 사진예술의 현 주소를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 사진축제가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14회째를 맞아 동강사진상 수상작가 전시를 비롯해 국제공모전, 강원도사진가전, 거리설치전 등 12개 섹션에 걸쳐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장, 영월기차역, 문화예술회관, 군청 등 여러 공간에서 사진을 즐길 수 있

으며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해 여름휴가 삼아 다녀오기 적당하다. 올해 동강사진상 수상자전은 정주하 백제예술대 교수의 '땅의 소리' '불안, 불-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리즈가 소개된다. 주제전은 '인생은 아름다워'를 주제로 국내외 10개국 13명 작가가 작품을 내었다.



월드프레스 포토 콘테스트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

네덜란드 왕실의 후원으로 1955년 설립된 월드프레스 포토 콘테스트는 포토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자유로운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월드프레스 포토 콘테스트는 미국



에서 출간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풀리처 전에 비해 전 세계 사진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 심사단이 입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개 언어로 된 책자로 발행되고 세계 100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회를 연다. 전 세계 132국, 5천692명의 사진가가 9만7천912장의 사진을 응모해 그 중 덴마크 사진기자 Mads Nissen가 촬영한 러시아의 동성애 커플 'Jon and Alex'가 2014년 최고의 보도사진으로 선정되었다. 월드프레스 포토 콘테스트전에는 2014 최고의 보도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출품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구 곳곳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헨릭 뵘스코브-패션과 예술,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전

12월 31일까지 대림미술관

북유럽 패션 디자이너 헨릭 뵘스코브(Henrik Vibskov)가 한국 관객들에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헨릭 뵘스코브는 지난 2003년 데뷔해 창의적인 패션으로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아온 패션 디자이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창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헨릭 뵘스코브의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을 감상할 수 있다.

작업의 과정을 기록한 200여 점의 사진을 비롯해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작업들이 소개됐다. 특히 민트색 풍선 구조물을 설치하고 민트 향이 나도록 한 전시장에는 패션 쇼 영상이 소개돼 마치 패션쇼 현장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누드 사진도 다채롭게 소개돼 평소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체에 대해 가졌던 관상을 알려주고 있다.



릴레이전 '꽃의 기억'

10월 20일까지 하자센터 허브갤러리

하자센터가 예술가와 수공예 창작물을 알리는 단체 '수다 F.A.T'와 손잡고 1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7개의 전시를 차례로 선보인다. 11명의 작가들이 '꽃'에 관한 기억을 담은 사진, 회화, 도예, 판화 등 다양한 작품을 릴레이로 선보이는 전시다. 손세정 & 문수현 & 홍예슬 (~8월 7일), 조은진(8월 8~19일), 이지영(8월 21~9월 3일), Todd Lowe & 반대걸(9월 4~9월 10일), 김현주 & Damon.TK(9월 24~10월 8일), 배상순(10월 9~20일) 작가 등이 참여한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회화 작품부터 집에 하나쯤 두고 싶은 도예 작품까지 다채롭다.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의 수상작-SoA의 '지붕감각'

9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마당

국립현대미술관의 '2015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서 건축가 그룹 SoA(이치운, 강예린)가 '지붕감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SoA는 건축의 사회적인 조건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다양하게 시도해오고 있는 건축가그룹이다. 2015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지붕감각'은 주름진 지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갈대를 엮어 만든 커다란 지붕은 햇살, 바람, 비 등 자연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이색적인 지붕이다. SoA는 현대건축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지붕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유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Organic Drawing, Pen, Ink, Indian ink on Canvas, 1168 x 910mm, 2013

이동엽展 〈Organic Drawing〉

2015. 8. 12 Wed — 8. 30 Sun

GALLERY

LOTTE HOTELS & RESORTS

서울시 중구 을지로30 롯데호텔서울 본관 1층

t. 02.759.7152

전 - 시 - 기 - 획

KISS GALLERY Keep It Simple Sentence

이태원키스 (140-824)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88

t. 02.745.0180 www.kissgallery.co.kr kissgallery@naver.com